

<평가관리번호 : 0-1-2023-04-0001 >

##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서 (정기)

1. 기관명 : 마리아재가복지센터(3-28200-00656)
2. 급여종류 : 방문요양
3. 평가예정일 : 2023년 08월 24일  
다만,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,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
4.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
 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
 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(평가지표) 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08월 10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



※ 문의 : 인천경기지역본부( 전화 : 031-230-7941, 031-230-7901 )

- \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제1항제3호의7에 따라 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대상이며,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(과태료)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
- \*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(평가의 절차 및 방법)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